

제27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원 발의 조례안
(4건)

거창군의회

- 목 차 -

의안번호	건 명	쪽수
2024-15	거창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	1
2024-16	거창군 건축물관리 조례안(도시건축과)	6
2024-17	거창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축과)	16
2024-18	거창군 학교우유급식 지원 조례안(농업축산과)	26

거창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이재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4-15
----------	---------

발의일자	2024. 02. 20.
발 의 자	이재운, 이흥희, 박수자,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신중양, 김향란, 최준규, 신미정, 김혜숙

1. 제안 이유

거창군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2조)
- 나. 의장 등의 책무(안 제3조)
- 다. 입법평가 대상, 기준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4조~6조)
- 라. 입법평가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9조)
- 마. 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용역, 입법평가 결과 공표 및 반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13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 나. 예산조치 : 필요 시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3. 12. 22. ~ 12. 27.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실효성 등을 평가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제3조(의장 등의 책무) ① 거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정기적으로 입법 평가를 실시하여 조례의 입법 목적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의 집행기관으로서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입법평가 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거창군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2. 시행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3.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제5조(입법평가 기준) ① 입법평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타당성·실효성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여부
3.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합성
4. 인권·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
5. 위원회 등 자문기관 구성 및 운영 적정성

6. 그 밖에 조례 규정의 실행에 관한 사항

② 입법평가 기준에 따른 입법평가 분석지표는 의장이 정한다.

제6조(입법평가 실시계획)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법평가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입법평가 실시 추진 계획
2. 제8조에 따른 거창군의회 입법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그 밖에 입법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의장은 군수와 협의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입법평가위원회) 의장은 입법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거창군의회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실시계획
2. 입법평가
3. 입법평가 결과 개선 권고안 마련
4. 입법평가 제도개선
5.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거창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거창군의회 의원
2. 거창군 자치법규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3. 변호사, 교수, 법제관 등 법률 또는 입법 전문가
4. 행정 전문가
5.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입법평가 결과가 공표되면 만료된다.

⑤ 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거창군의회 의사담당 주사가 된다.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하 “업무담당부서”라 한다)의 의견을 듣거나 업무담당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받은 업무담당부서는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용역) 의장은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법평가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입법평가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입법평가 결과 공표) ①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거창군의회 누리집에 공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거창군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지한다.

제13조(입법평가 반영) 거창군의회 상임위원회는 입법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소관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이행권고나 조례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7.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거창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신중양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4-16
----------	---------

발의일자	2024. 02. 20.
발 의 자	신중양, 이흥희, 박수자,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김향란, 최준규, 이재운, 김혜숙, 신미정

1. 제안 이유

「건축물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생애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적용범위 (안 제1조 ~ 제3조)
- 나. 정기점검·긴급점검·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대상(안 제4조 ~ 제6조)
- 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지원(안 제7조)
- 라. 안전진단 대상(안 제8조)
- 마.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안 제9조)
- 바. 건축물 해체신고·허가 대상(안 제10조 ~ 제11조)
- 사. 현장점검 및 대행 수수료(안 제12조 ~ 제13조)
- 아.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안 제14조)
- 자. 빈 건축물의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방법(안 제1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건축물관리법법」 제15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0조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 다. 합 의 : 도시건축과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4. 2. 8. ~ 2024. 2. 15.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정기점검의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왼쪽 굽힘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거창군 건축 조례」 제10조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전문위원회의 심의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3.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축물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축·옹벽 등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2. 20년이 경과한 골뚝

제7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지원)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보강 또는 철거에 따른 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기준은 신청한 총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보수·보강 등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제9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

를 수행한다.

1. 건축물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및 안전대책의 수립 등
2.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내 건축물. 다만, 정비구역 외곽경계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11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있는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지하도 출입구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0미터 이상인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가 접한 경우
2. 해당 건축물이 지상 3층 이상인 경우로서 3면 이상이 인접 건물에 접하는 경우
3. 그 밖에 해당 건축물의 해체로 인하여 인근 주민이나 유동인구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등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현장점검) ①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로부터 필수확인점에 대한 현장점검 요청이 있을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른 현장점검 업무의 대행 수수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의 업무대가를 적용한다.

제14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감리자의 지정을 거부한 경우
3.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건축사 자격을 반납한 경우
4.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5. 각 목의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경우
가.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한 경우
나. 국내외 장기 출장 또는 교육을 간 경우
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6. 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경우
7. 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군수가 감리자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빈 건축물의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방법)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

정평가사협회에 요청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거창군 건축조례」 제32조에 따라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을 받은 건축물은 이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관계법령

□ 건축물관리법

[시행 2023. 7. 19.] [법률 제19367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1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안전, 화재안전 및 에너지성능 등을 점검할 수 있다.

1.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3.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이하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이라 한다)결과를 해당 관리자에게 제공하고 점검결과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보수·보강 등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 1. 2.] [대통령령 제34093호, 2024. 1. 2., 일부개정]

제10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①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내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내 건축물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해제된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내 건축물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건축물
5.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물
6. 「건축법」 제정일(1962년 1월 20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
7. 그 밖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 등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제3항의 명부에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점검(이하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1. 대상 건축물의 용도 및 구조
2. 대상 건축물의 위치 및 규모
3.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유

③ 제2항에 따라 점검을 요청받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해당 건축물의 관리실태 등을 검토하고 점검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거창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향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4-17
----------	---------

발의일자	2024. 02. 20.
발 의 자	김향란, 이홍희, 박수자,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신중양, 최준규, 이재운, 신미정, 김혜숙

1. 제안 이유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하여 빈집 등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거창군에 유입하는 인구에 보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개정된 조례에 맞게 제명을 ‘빈집정비’에서 ‘빈집정비 및 활용’으로 변경함.(안 제명)
- 나. 조례의 목적을 새롭게 규정함(안 제1조)
- 다. 군수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 라. 빈집정비의 대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 마. 빈집의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64조, 제64조2, 제67조
- 나. 예산조치 : 필요 시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도시건축과, 행복농촌과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4. 2. 15 ~ 2024. 2. 19.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를 “거창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를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민이”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이나 사용승인·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주택 등은 제외한다.
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용지”란 공용주차장, 운동시설, 녹지 공간 등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4. “활용”이란 빈집정비 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제목 “책무”를 “군수의 책무”로 같은 조 제1항 중 “빈집 정비를”을 “빈집정비와 활용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군수는 군민에게 빈집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 제목 “정비 대상”을 “빈집정비 대상”으로 한다.

제7조 제목 “지원 대상”을 “빈집정비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8조제1항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빈집정비를 한 후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다만 공공용지로 활용할 경우에는 3년 이상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 및 화재 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빈집의 활용) ① 군수는 정비를 끝낸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1.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귀농·귀촌인, 한부모가족, 장애인, 고령자 및 성별·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2. 문화예술인 주거·창작공간,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공용지 등 주민복지 증진 또는 사회적가치 활성화를 위한 시설
3.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소방시설 등 주민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② 제1항에 따라 빈집을 활용하게 할 경우에 입주자 선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거창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u></p>	<p><u>거창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u>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u>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빈집”이란 <u>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 및 건축물을 말한다.</u></p>	<p>1. “빈집”이란 「<u>농어촌정비법</u>」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u>미분양주택이나 사용승인·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주택 등</u>은 제외한다.</p>
<p>2. “빈집 정비”란 <u>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u></p>	<p>2. “빈집정비”란 <u>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u></p>
<p><신 설></p>	<p>3. “<u>공공용지</u>”란 <u>공용주차장, 운동시설, 녹지 공간 등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u>를 말한다.</p>
<p><신 설></p>	<p>4. “<u>활용</u>”이란 <u>빈집정비 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u>을 말한다.</p>
<p>제3조(책무) ① <u>군수는 빈집 정비</u>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p>	<p>제3조(군수의 책무) ① <u>군수는 빈집정비와 활용</u>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p>

② 군수는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재원 마련을 위하여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빈집정비지원을 위한 계획(이하“정비계획”이라 한다)을 필요한 경우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2.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3.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4.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5. 빈집 활용에 대한 사항
 6. 빈집 정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정비 대상) ① 빈집 정비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 4. (생략)
- ② (생략)

제7조(지원 대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② 군수는 군민에게 빈집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 제>

제6조(빈집정비 대상) ① 빈집정비 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빈집정비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

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 (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 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토지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신 설>

3.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생략)

<신 설>

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제8조제1항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빈집정비를 한 후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다만 공공용지로 활용할 경우에는 3년 이상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 및 화재 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현행과 같음)

제8조(빈집의 활용) ① 군수는 정비를 끝낸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1.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귀농·귀촌인, 한부모가족, 장애인, 고령자 및 성별·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2. 문화예술인 주거·창작공간,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공용지 등 주민복지 증진 또는 사회적가치 활성화를 위한 시설
3.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소방시설 등 주민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② 제1항에 따라 빈집을 활용하게 할 경우에 입주자 선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관계법령

□ 「농어촌정비법」

[시행 2023. 10. 24.] [법률 제19749호, 2023. 10. 24., 일부개정]

제6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5년 단위의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1.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방향
2. 빈집의 현황 및 실태
3. 빈집의 철거·개축·수리·활용 등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
4.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5.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빈집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군·구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시·도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시·도지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24.>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만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만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3. 제1호에 따른 농촌과 제2호에 따른 어촌 모두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매년 빈집정비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13.>

⑤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4. 13.>

[전문개정 2020. 2. 11.]

제64조의2(빈집실태조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 및 이행계획의 수립·시행, 빈집의 관리·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빈집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1. 빈집의 소재 현황
2. 빈집의 관리 상황 및 방치기간
3. 빈집의 소유자 및 권리관계
4. 빈집 및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의 현황
5. 그 밖에 빈집 발생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빈집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빈집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2. 11.]

제67조(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조성 등)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10호바목, 자목 및 차목에 따른 빈집 정비와 농어촌 주택 개량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이하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7.>

②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개정 2013. 3. 23.>

③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7., 2020. 2. 11.>

1. 제2조제10호자목 및 차목의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2. 농어촌 주택의 개량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3. 농어촌 주택의 품질관리에 드는 경비
4. 제65조의5에 따른 빈집 철거 비용 및 보상비
5.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드는 경비

거창군 학교우유급식 지원 조례안

(김향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4-18
----------	---------

발의일자	2024. 02. 20.
발 의 자	김향란, 이흥희, 박수자,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신중양, 최준규, 이재운, 신미정, 김혜숙

1. 제안 이유

이 조례는 거창군 학교에 우유 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 우유의 소비 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
- 나. 학교우유급식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다. 효율적 시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라.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학교급식법」 제3조, 제8조, 제9조,
「낙농진흥법」 제3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
「축산법」 제3조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 다. 합 의 : 농업축산과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4. 2. 13. ~ 2024. 2. 19.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학교우유급식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학교에 우유 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 우유의 소비 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 우유 급식의 지원)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 범위에서 거창군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우유 급식(이하 “학교우유급식”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우유급식 지원 대상 및 방법 등 세부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실태 조사 등) ① 군수는 학교우유급식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 학교우유급식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거창교육지원청, 관내 단체 등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협력체계) 군수는 학교우유급식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거창교육지원청, 낙농관련 단체·협회 및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학교우유급식 지원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 학교우유급식의 지원

나. 관련조문 : 안 제2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천원)

구 분	1차 연도 (24년)	2차 연도 (25년)	3차 연도 (26년)	4차 연도 (27년)	5차 연도 (28년)	합계
학교우유급식 지원	569,882	569,882	569,882	569,882	569,882	2,849,410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4,301\text{명} \times 530\text{원} \times 250\text{일} = 569,882\text{천원}$

작성자 : 거창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 김 규 태

관계법령

□ 학교급식법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39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경비부담 등) ①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는 해당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②급식운영비는 해당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③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07. 10. 17., 2010. 7. 23., 2021. 3. 23.>

1.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

자이거나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학생,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2.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③ 교육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학교급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범위는 제8조제4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급식에 관한 경비에 한정한다. <신설 2021. 12. 28.>

□ 낙농진흥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5. 19.>

1. 낙농업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2. 낙농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3. 낙농 기술 향상을 위한 지도에 관한 사항
4.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5. 원유의 품질 향상과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6. 원유의 집유, 수송 및 저장시설과 장비에 관한 사항
7. 학교 우유 급식, 소비 홍보 등 유제품의 수요 확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낙농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낙농진흥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낙농진흥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5. 8.]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8445호, 2021. 8. 17.,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7. 10. 24.>

1. “가축”이란 소, 말,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돼지(사육하는 멧돼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닭, 오리, 그 밖에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축산물”이란 식육·포장육·원유(原乳)·식용란(食用卵)·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을 말한다.

3. “식육(食肉)”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枝肉), 정육(精肉), 내장, 그 밖의 부분을 말한다.

4. “포장육”이란 판매(불특정다수인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세절(細切) 또는 분쇄(粉碎)를 포함한다]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서 화학적 합성품 등의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5. “원유”란 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처리·가공을 목적으로 하는 착유(搾乳) 상태의 우유와 양유(羊乳)를 말한다.

6. “식용란”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알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집유(集乳)”란 원유를 수집, 여과, 냉각 또는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8. “식육가공품”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그 밖에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유가공품”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우유류, 저지방우유류, 분유류, 조제유류(調製乳類), 발효유류, 버터류, 치즈류, 그 밖에 원유 등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알가공품”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난황액(卵黃液), 난백액(卵白液), 전란분(全卵粉), 그 밖에 알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작업장”이란 도축장, 집유장, 축산물가공장, 식용란선별포장장, 식육포장처리장 또는 축산물보관장을 말한다.

12. “기립불능(起立不能)”이란 일어서거나 걷지 못하는 증상을 말한다.

13.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란 축산물가공품(식육가공품, 유가공품 및 알가공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그 축산물가공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축산물가공품의 이력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5. 25.]

□ 축산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8445호, 2021. 8. 17., 타법개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2. 22., 2013. 3. 23., 2018. 12. 31.>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